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15/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수능완성 독서 유형연습2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법 제33장에 있는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公然)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명예'인데, 이는 명예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명예에 대해서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격에 내재하는 가치라는 관점도 있지만, 명예가 사회생활을 통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명예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본다. 명예에 관한 죄는 모욕죄와 명예 훼손죄가 있으며, 명예 훼손죄는 단순 명예 훼손죄를 바탕으로 감경 유형과 가중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의 적시가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한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행위, 비꼬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모욕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에는 '경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 일반의 기준에서 경멸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불친절, 불손, 무례에서 오는 불쾌감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공연히'는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예 주체를 가리키는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 성립의 요건인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며, 진실하지만 명예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 해당되지 않는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 모욕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소수의 특정인에게 사실을 전파한 경우라도 특정인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 명예 훼손죄의 명예 주체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명예 주체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죄와 달리 단순 명예 훼손죄는 명예 주체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명예 주체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다른 유형의 명예 훼손죄에도 적용된다. 단순 명예 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명예 훼손죄에서 내용상 처벌이 가중되는 유형으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고, 감경되는 유형으로는 '사자(死者)의 명예 훼손죄'가 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는 행위자가 ⓒ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시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행위자의 착오로 인해 진실로 알고 적시했지만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했지만 진실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일어난 피해와 고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자의 명예 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만 적용되며, ⓓ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는 사자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자의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적시 방법에 따른 가중 유형으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있다. ㉠ 형법 제309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해 단순 명예 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판물의 전파력이 크며, 그에 따라 명예 훼손의 피해도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매체들은 전파력이 크지만 형법 제309조에는 이러한 매체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도 '출판물'에서 유추하여 적용할 수도 있지만, 형법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대신 이들 매체들을 이용한 명예 훼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한다. 정보 통신망법 제70조의 벌칙은 형법 제309조와 비슷하지만 벌금이 단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때 3천만 원 이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할 때 5천만 원 이하로 형법 제309조보다 무겁다.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한다.

명예 훼손죄는 개인의 명예는 보호할 수 있으나 진실이 은폐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도 상충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형법 제310조에는 단순 명예 훼손 행위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 세부적인 오류나 과장이 있더라도 중심적인 내용은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며, 부분적 진실을 침소봉대하여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것은 목적과 영향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잘못된 언론 보도의 경우 개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위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선입견을 가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③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사실의 적시 없이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비방한 경우에 회사는 명예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⑤ 식당에서 종업원의 불친절로 인해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경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2. <보기>는 공소가 제기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들이다.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최고액이 선고되었다고 할 때, 벌금액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단, 모두 하나의 조항만 적용되었으며, 사실 여부 인지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었다.)

<보 기>

ㄱ.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인터넷 기사마다 욕설과 조롱의 댓글을 씀.
ㄴ. 강연에서 죽은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ㄷ.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함.
ㄹ. 회고록을 출판하면서 유명 작가인 친구에게 숨겨 둔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힘.
ㅁ. 유명한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누리 소통망[SNS]에 올림.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② ㉠에 해당하는 죄라도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③ ㉡의 적용 범위에는 ㉠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④ ㉡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다.
⑤ ㉢은 공익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반듯한 이미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 A는 매니저 '갑'의 일 처리가 미숙하여 이에 대한 지적을 했다. '갑'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말을 외치고 왔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을'은 친구인 '병'에게 연예인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연예인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병'은 그 연예인이 A라고 단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블로그에 'A의 폭언에 시달린 매니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을'이 한 이야기를 올렸다. 이 글로 인해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A는 '을'과 '병'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① A에게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는 것은 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이므로 명예 훼손의 근거가 될 수 있겠군.
② '갑'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찾아가서 혼자 외친 행위는 적시된 내용과 공연성을 판단할 때 명예 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겠군.
③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연예인이라는 것 외에 명예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면 '을'의 명예 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겠군.
④ '을'이 '병'에게 전달한 이야기에 A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본 것을 진실로 믿었다면 '을'과 '병'은 모두 형법상 단순 명예 훼손죄의 적용을 받겠군.
⑤ '을'이 '병'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전파한 행위이지만 '병'이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을'의 행위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5.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단순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지
②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③ ⓒ: 고의로 거짓을
④ ⓓ: 사실의 적시가 없는
⑤ ⓔ: 진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